

□ 주요 개정 내용

① 용어의 정의 신설

- 고시 적용기준과 해석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주류소매업자', '금품', '제공', '시음주', '예상매출액' 정의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소매업자) 주류 판매업 면허자로서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기타소매업자 ▶ (금품) 주류를 제외한 모든 금전과 물품 ▶ (제공) 직·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 (시음주) 주류 홍보를 위해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주류와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출시 후 3개월 이내의 주류 ▶ (예상매출액) 사업개시 후 최초 1개월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평균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액'중 큰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②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 현행 고시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해소

현 행	개 정(안)
▶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u>금품 및 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u>	▶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u>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u>

③ 정상적 영업활동·소상공인 지원 및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 허용

- 1) 제조자·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통음식업자에 한함)에게 제공하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제공 허용

현 행	개 정(안)
<p>▶ <신 설></p>	<p>▶ 제조·수입업자는 RFID 적용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한도내 금품 제공 허용</p> <p>- (도매업자별) 당해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1% 한도</p> <p>- (유통음식업자별) 당해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3% 한도(공급가액은 도매업자가 유통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 포함)</p>

- 2) 유통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에 한함) 제공대상을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로 확대

현 행	개 정(안)
<p>▶ 내구소비재는 <u>신규로</u> 개업하는 <u>음식업소</u>에 한해 공급 가능</p>	<p>▶ 내구소비재는 <u>유통음식업자</u>에게 제공 가능</p>

- 3)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에 한하여 유통음식업자에게 제공 허용

현 행	개 정(안)
<p>▶ <신 설></p>	<p>▶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당 가액이 5천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소모품은 유통음식업자에 한해 제공 가능</p>

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현 행	개 정(안)
<p>▶ <신 설></p>	<p>▶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 부담 금지 - 과도한 대가 또는 차별적·변칙적인 광고 선전비 제공 금지

5)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의 사전승인 시 물량한도를 현재의 12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

* 현행 「시음주 사전승인 내부처리 지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으로 신설

현 행	개 정(안)
<p>▶ 「시음주 사전승인 내부처리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석식소주 : 30,000병 · 맥주 : 30,000병 · 위스키 : 1,500병 · 기타 주류 : 15,000병 - (금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매출액 3% 	<p>▶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석식소주 : 36,000병 · 맥주 : 36,000병 · RFID 적용주류 : 1,800병 · 그 외 주류(주종별) : 18,000병 - (금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물량기준 용량의 단위(현행 유지)

- 희석식 소주 1병당 : 360ml 기준
- 맥주, RFID 적용주류 및 그 외 주종 : 500ml 기준

※ 종전 '시음주'와 '기증주'를 "시음주"로 통일

6)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제공 한도 확대

* (연간 총액한도)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 → 1.5%

* (거래금액 한도) 거래금액의 5% → 10%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액한도 - (제조·수입업자) 직전연도 주종별 과세표준의 <u>1%</u> 한도 - (소매업자)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u>1%</u> 한도 ▶ 거래금액당 경품 한도 - 주류거래금액의 <u>5%</u> 한도 ▶ (제조·수입업자) 병마개·상표를 이용한 경품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액한도 - (제조·수입업자) 직전연도 주종별 과세표준 합계액의 <u>1.5%</u> 한도 - (소매업자)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u>1.5%</u> 한도 ▶ 거래금액당 경품 한도 - 주류거래금액의 <u>10%</u> 한도 ▶ (제조·수입업자) 출고·판매시 병마개·상표·RFID 태그 등에 경품내용 표시 금지

4)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 등 사전 예방

-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원칙
- 제조·수입업자는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주류의 용도별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 다만,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인 수입업자는 대형매장을 제외한 소매업자에게 판매 시 예외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자)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면허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원칙 - (제조·수입업자) 동일지위의 거래처에는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 *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별도 기준 적용

5) 쌍벌제 도입

-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개정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업자·주류도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 - (주류 소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u>받아서는 안 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면허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u>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u>

6) 출고량 감량처분의 합리적 개선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등이 주세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 처분 받은 해당 제조장 등에 한해 출고량 감량처분하도록 개선
- 다만,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등의 출고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는 금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량처분 범위)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u>제조자의 전체 출고량 감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량처분 범위)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u>처분 받은 해당 제조장·직매장의 전체 출고량 감량</u> * 다만,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사업장의 출고량을 증가시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7]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고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통일성 제고

*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을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에 신설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12>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준)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사의 단일성) 단일 의사표시,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근접성, 대상의 단일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대상의 단일성’은 적용 제외 * 행위 대상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행위의 경우에도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위반행위의 동일성)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한 경우 ▶ (특례기준) 신고·제출·보존 등 납세협력에 관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별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기한을 둔 경우) 일정한 기간·기한 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즉시 또는 기간·기한이 없는 경우) 매 분기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국세청장(지방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일반기준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조문 요약)

<새롭게 재구성한 고시의 편제와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u>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u>제47조</u>,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u>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자자가 주류를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 정상화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p>
<p>제2조 <u><신설></u></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류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기타소매업자</u> 2. <u>(금품) 주류를 제외한 모든 금전과 물품</u> 3. <u>(제공)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u> 4. <u>(시음주) 주류 홍보를 위해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주류와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출시 후 3개월 이내의 주류</u> 5. <u>(예상매출액) 사업개시 후 최초 1개월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평균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액' 중 큰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u>

현 행	개 정(안)
<p><u>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u></p> <p>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물량 공급 금지(<u>개정안 제3조 제4항으로 이관</u>)</p> <p>2. 무자료 혈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 (<u>삭제</u>)</p> <p>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시설 등 수취 금지(<u>개정안 제3조 제1항으로 이관</u>)</p> <p>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u>개정안 제3조 제6항으로 이관</u>)</p> <p>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 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u>개정안 제3조 제7항으로 이관</u>)</p>	<p><u>제3조(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u></p> <p>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 태그 등 회수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 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금지</p> <p>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FID 적용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 한하여 제공 가능 ○ 도매업자는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한 금액 포함)는 3% 한도 2.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에 한함) 제공 가능

현 행	개 정(안)
<p>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u>개정안 제3조 제1항으로 이관</u>)</p> <p>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u>개정안 제 3조 제5항으로 이관</u>)</p> <p>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 (<u>개정안 제3조 제2항 제5호로 이관</u>)</p> <p>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u>개정안 제3조 제1항으로 이관</u>)</p>	<p>3.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당 5천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소모품은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 가능</p> <p>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제공 가능</p> <p>5.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주류교환권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공 가능</p> <p>6.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제공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과세표준의 1.5% 한도 ○ (거래금액 한도) 주류 거래금액의 10% 한도 ○ 주류·주류교환권 제공 금지 ○ 주류 출고·판매 시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에 경품내용 표시·부착 금지 <p>③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주류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현 행	개 정(안)
<p>10.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u>개정안 제3조 제2항 제6호로 이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제공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과세표준의 1% 한도 ○ (거래금액 한도) 주류 거래금액의 5% 한도 ○ 병마개·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의 용도별로 동일시점에 동일지위·동일가격 판매(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 ○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업자가 대형매장을 제외한 소매업자에게 판매시 동일시점에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대형매장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 주류의 평균 가격 이상으로 판매) <p>④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물량 공급 금지</p> <p>⑤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키는 행위 금지</p> <p>⑥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 물량의 감량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p> <p>⑦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에 대해 해당 주류를 취급하는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p>

현 행	개 정(안)
<p><u>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u></p> <p>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됨(<u>개정안 제4조 제4항으로 이관</u>)</p> <p>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 (<u>삭제</u>)</p> <p>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u>개정안 제4조 제1항으로 이관</u>)</p> <p>4. 주류제조자와 짜고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개정안 제4조 제5항으로 이관</u>)</p>	<p><u>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u></p> <p>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 태그 등 회수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 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또는 제공받는 행위 금지</p> <p>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내구소비재 (냉장진열장에 한함) 제공 가능 2.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 당 5천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소모품은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 가능 3.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제공 가능

현 행	개 정(안)
	<p>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받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p> <p>5. RFID 적용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1% 범위 안에서 제공받는 금품</p> <p>③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p> <p>④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물량 공급 금지</p> <p>⑤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키는 행위 금지</p>
<p><u>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u></p> <p>1.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개정안 제5조 제1항으로 이관)</p>	<p><u>제5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u></p> <p>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 태그 등 회수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 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또는 제공받는 행위 금지</p>

현 행	개 정(안)
<p>2.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제공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한도 <u>(제5조 제2항 제1호로 이관)</u> ○ (거래금액 한도) 주류 거래 금액의 10% 한도 <u>(제5조 제2항 제1호로 이관)</u> ○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u>(제5조 제3항으로 이관)</u> <p>3. 주류공급자와 짜고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u>(제5조 제4항으로 이관)</u></p> <p>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 <u>(제5조 제2항 제1호로 이관)</u></p>	<p>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제공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한도 ○ (거래금액 한도) 주류 거래 금액의 10% ○ 주류·주류교환권 제공 금지 2.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주류 제조·수입업·도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에 한함) 3.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조·수입업·도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당 5천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소모품 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받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5.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RFID 적용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3% 범위 안에서 제공받는 금품 (유흥음식업자가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합산)

현행	개정(안)
	<p>③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다만,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p> <p>④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키는 행위 금지</p>
<p>제5조(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 사항)<u>(제3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2호로 이관)</u></p> <p>○ 신규 유흥음식업자 뿐만 아니라 <u>기존 유흥음식업자에게도 내구 소비재(쇼케이스에 한함) 제공 가능</u>하도록 개정</p>	
<p>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u>2020년 6월 30일</u> 까지로 한다.</p>	<p>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u>2022년 6월 30일</u> 까지로 한다.</p>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p>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처벌 횟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고 감량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량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회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body> </table> <p>※ 처벌횟수 산정: 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 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100%-출고감량률) ·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u>제조자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u></p>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p>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u>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제5항</u>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처벌 횟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고 감량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량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회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출고량의 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body> </table> <p>※ 처벌횟수 산정: 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 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100%-출고감량률) ·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u>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단,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사업장의 출고량을 증가시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u></p>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u>2022년 3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u>2022년 6월 30일</u> 까지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안)
<p>제90조(불성실 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p> <p>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p> <p>(이하 생략)</p>	<p>제90조(불성실 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p> <p>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u>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제5항</u>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p> <p>(이하 현행과 같음)</p>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1호> (신 설)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 제조·수입업 면허장소별 기준

<p>승인주류</p>	<p>○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p>																								
<p>승인장소</p>	<p>○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p> <p>○ (불허장소)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p> <p>○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p>																								
<p>승인한도 (연간누계)</p>	<p>○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p> <table border="1" data-bbox="418 1348 1382 1818"> <thead> <tr> <th colspan="2">승인주류</th> <th colspan="2">승인물량 한도</th> </tr> <tr> <th>주종</th> <th>기준용량</th> <th>병수</th> <th>용량</th> </tr> </thead> <tbody> <tr> <td>희석식소주</td> <td>360ml</td> <td>36,000병</td> <td>12,960 ℓ</td> </tr> <tr> <td>맥주</td> <td>500ml</td> <td>36,000병</td> <td>18,000 ℓ</td> </tr> <tr> <td>RFID 적용 주류</td> <td>500ml</td> <td>1,800병</td> <td>900 ℓ</td> </tr> <tr> <td>그 외 주류(주종별)</td> <td>500ml</td> <td>18,000병</td> <td>9,000 ℓ</td> </tr> </tbody> </table>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ml	36,000병	12,960 ℓ	맥주	500ml	36,000병	18,000 ℓ	RFID 적용 주류	500ml	1,800병	900 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ml	18,000병	9,000 ℓ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ml	36,000병	12,960 ℓ																						
맥주	500ml	36,000병	18,000 ℓ																						
RFID 적용 주류	500ml	1,800병	900 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ml	18,000병	9,000 ℓ																						
<p>검토 및 승인권자</p>	<p>○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p>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2호> (신 설)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주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명령사항(국세청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일반기준)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의사의 단일성' 인정

<기준 ①> 행위 의사가 단일한 「단일 의사표시」

<기준 ②> 행위가 일정기간 단절되지 않은 「시간적 근접성」

<기준 ③> 행위 장소가 이어져 단절되지 않은 「장소적 근접성」

<기준 ④> 행위 대상이 단일한 「대상의 단일성」

* 행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기준④> 적용 제외

* 행위 대상은 둘 이상의 거래, 제3자를 통한 거래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행위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동일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동일성' 인정

(특례기준 : 납세협력에 관한 사항) 주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제출, 작성, 비치, 보존, 교부하는 등 납세협력에 관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래 기준을 적용

<기준 ①> 기간·기한을 둔 경우 ⇨ 일정한 기간·기한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기준 ②> 즉시 또는 기간·기한이 없는 경우 ⇨ 매 분기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일반기준】 적용**